

등록번호	건축과-4654
등록일자	2026. 1. 23.
결재일자	2026. 1. 23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주거복지팀장	건축과장	건설안전국장
이찬	김수진	배형근	정회정
협조			

2026년 완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



건설안전국
건축과

2026년 완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

I

사업 개요

□ (추진근거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5조, 제67조, 제108조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

□ (사업대상자)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,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

* (사업범위) 단독주택의 신축, 증축, 리모델링(대수선 규모 이상) 등

□ (사업내용) 농어촌 노후·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(100%) 지원

대출한도	금리	상환기간
(신축) 2.5억원, (증축·대수선) 1.5억원 *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,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	2%고정 또는 변동금리 *청년의 경우 1.5%고정금리	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

○ (대상주택) 연면적(주택+부속건축물) 150㎡이하 단독주택

○ (세제혜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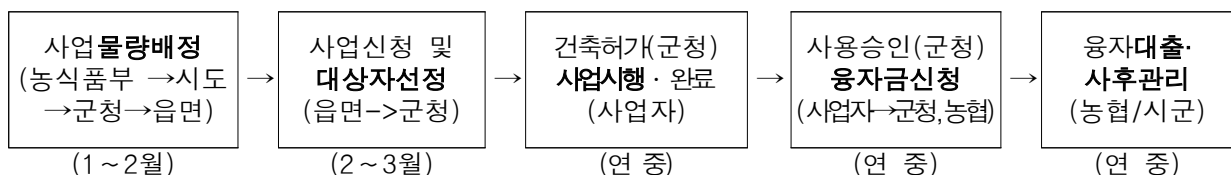
-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 *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

-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*소득세법 제52조

□ ('26년 상반기 사업량) 20동

* 5년간 평균추진실적과 사업수요를 반영한 읍·면별 배정 물량은 붙임1 참조

□ 사업추진체계



II

사업추진 시 유의사항

□ (사업대상자 선정)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가능

- ①건축 인·허가 신청(승인)자 ②슬레이트 지붕개량자
- ③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④어린자녀(0세부터 초등학생까지)보육가정
- ⑤다문화가정 ⑥무주택자 ⑦귀농·귀촌을 하려는 자
- ⑧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⑨농촌빈집 개량자(2주택)

* 사업포기자를 감안하여 대기자 명단 확보

○ 반드시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(서식1) 및 관련서류*를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

*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○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 사업신청 요건* 준수

*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한 자는 실제 건축 착공전까지는 사업신청가능
(사업 신청시 현재 대상부지 사진 첨부(준공시 전·후 사진대지 제출))

○ 주택소유확인 대상자 범위 : ‘사업신청자와 사업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’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

* 주택소유여부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확인

○ 취득세 감면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여 민원 발생 방지

○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(공문) 송부,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

○ 상반기 배정 물량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은 ‘26.2.20일 까지 완료,
하반기 배정 물량 및 일정은 추후 추진

□ (연계 지원) 개량 또는 철거하는 주택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, 자원순환과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안내

□ 사업실적확인

-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(본청 방문 작성)

-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(계산서)로 증빙 가능
-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제163조(계산서의 작성·발급 등) 준용

□ 추진현황 제출 및 사업연장

- 읍·면 담당자는 사업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군에 제출
- 읍·면 담당자는 다음 연도로 사업기간 연장 시, 연장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

※ 자세한 사항은 「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」 참조

Ⅲ

향후 일정

내용	날짜 및 기간
○ 상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 (읍·면 → 군) * 배정 물량 대비 사업대상자를 100%로 선정하지 못하였거나,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 모집 예정	'26.1.26. ~ 2.20
○ 사업추진 및 하반기 수요 조사 (상반기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)	'26.2.28. ~ 6.31
○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 (읍·면 → 군)	'26.7. ~ 8.
○ 사업 연장 대상자 수요 제출 (사·군·구 → 사·도) <u>*'26.12.15일까지 착공신고 혹은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'27.8.31일까지로 사업 연장 신청(1회) 가능</u>	'26.12.15 ~ 12.31
○ '27년 사업대상자 수요 제출 (사·군·구 → 사·도)	'26.12.1 ~ 12.31

음·면별 사업계획량

시·도	2026년도		추진실적(‘20~ ‘24)							비고
	상반기 배정 물량	수요 조사 현황	‘21	‘22	‘23	‘24	‘25			
합계	20	71	65	47	81	95	‘25 확정	포기	완료 및 연장	
							51	27	31	
삼례읍	3	5	5	8	6	8	4	3	1	지구단위계획구역
봉동읍	1	5	7	10	8	6	2		2	
용진읍	3	10	7	6	8	8	5	2	3	지구단위계획구역, 수요
상관면	2	5	2	3	1	4	2	1	1	한옥
소양면	3	16	2	10	8	12	2	1	1	수요, 한옥
이서면	1	6	4	13	7	11	5	3	2	
구이면	1	5	9	6	14	8	7	4	3	
고산면	1	4	3	2	6	14	11	5	7	
비봉면	1	3	1	1	4	4	2		3	
운주면	1	4	2	4	5	4	5	3	4	
화산면	1	3	1	2	10	11	2	3	2	
동상면	1	1	2	1	0	4	0			
경천면	1	4	2	0	4	1	4	2	2	
※ 사업연계		한옥지원사업 · 상관 용정한옥마을 ·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사업								